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57 발의연월일: 2022. 9. 6.

발 의 자:김예지・태영호・최혜영

배준영 · 정우택 · 양향자

권명호 • 박수영 • 김민석

장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서비스 제공 대상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 특히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직원 고용이 어려운 상황인바, 과로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에 대하여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안제1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
	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
	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
	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u>로 정한다.</u>